

2인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아래 청렴계약(서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 수칙>

1. 내선번호 확인: 공고문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누리집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공고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법정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학교장터 등)를 통해서만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 및 계약 체결을 명분으로 금품을 직접 수취하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폐기물처리용역 2인수의 견적(전자입찰) 제출 공고

****3번(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의 업종 자격, 영업대상 폐기물 요건 등 반드시 확인 후 참가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가. 용역명: (가칭)에코3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속비)
 -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954번지 일원
- 나.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내역서는 입찰서 제출기간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건축지원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9.(수) 14:00 ~ 2026. 9. 15.(화) 14:00
-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5.(화) 15:00 우리교육청 채정과 집행관PC
- 마. 용역개요: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1,035톤
-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까지
- 사. 기초금액: 금89,100,000원(추정가격 81,000,000원 + 부가가치세 8,100,000원)
 - ※ 이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 추정 연부액: 2026년 0원, 2027년 75,000,000원, 2028년 14,100,000원

2 견적서(전자입찰) 제출 및 계약방식

- 가.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 다. 지역제한 및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참가자격(업종 등)을 필독하시고 견적 제출바랍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혹은 공동수급체)여야 합니다.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자격을 갖추고,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에 본 **용역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이 포함되는 자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별도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참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수집·운반업의 수집·운반업 차량 기준: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업체 간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으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분담비율은 ①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38%, ②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29%, ③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33%으로 합니다 (동일한 업체가 둘 이상의 업종에 대한 자격을 보유한 경우, 해당 업종을 함께 분담하여 이행 가능).

※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부산광역시)**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4호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입찰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전적참가 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전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전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5 전적서 제출

가. 본 용역 전적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전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전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전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전적제출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전적서는 연기된 전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전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사.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2개 이상 유효 투찰에도 불구하고 예가 초과, 낙찰하한을 미달 등으로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재입찰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6:3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전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에 의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가.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나. 본 건적은 기초금액 $\pm 3\%$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금액을 산술 평균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라. 낙찰예정자는 다음의 서류를 낙찰예정통지를 받은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 미비로 간주, 차순위자에게 낙찰기회를 부여합니다.
 - 1)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2) 장비보유현황 입증 서류(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8 청렴서약서 제출

- 가. 입찰 참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시 해당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착공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10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10조 의거 [붙임]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민원마당→신고하기→공익제보센터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관련문의:

나라장터 이용 콜센터

☎1588-0800

용역 내용 학교건축지원과

시설1팀

임봉규

☎8600-789

용역공고문

재정과

계약관리팀

이정행

☎8600-743

2026. 9. 8.

부산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교육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 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3. 업체명 :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table><tr><td>소방서</td><td>119</td><td>병원</td><td></td><td>관할 고용노동부</td><td></td></tr></table>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아니오 ()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